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균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6. 김상균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4.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김상균 의원)

가. 제안이유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옥상 조경의 의무적 설치로 노후화된 건축물의 시설 개선공사 등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제한됨에 따라, 현행 옥상 조경 의무적 설치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옥상 조경 기준 삭제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장석환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옥상 조경 의무적 설치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옥상 조경 기준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화성시 포함 6개 시에서 운용, 25개 시·군에서 미운용 중이며, 수원, 고양, 부천, 의정부는 옥상 조경 기준 폐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6. 화성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4.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강대환 도시재생과장)

가.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846호, 2022. 8. 2.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 해체계획서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현장점검 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장석환 전문위원)

가.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 해체계획서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현장점검 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